



# 안내문

2015년 7월 15일

## 일부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수혜자에게 중요한 정보 3년\* 노동 허가를 받은 경우

워싱턴—2015년 2월 16일 이후에 3년 취업 허가 서류(EAD)를 받으신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수혜자들의 경우 동 서류가 실수로 발급되었을 수 있으므로 반납해야 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에 약 2,100명의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수혜자들에게 2년 취업 허가 서류 대신에 3년 취업 허가 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미국이민국은 동 수혜자들의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2년 간의 유예 조치 및 취업 허가를 반영하도록 그들의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미국이민국은 정정된 2년 취업 허가 서류를 재발급하여 이분 분들에게 우송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이민국은, 3년 취업 허가 서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일체의 관련 승인 통지와 함께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해당자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미국이민국은 이와 같이 유효하지 않은 취업 허가 서류의 반납 건수를 철저히 추적하고 있으며 나머지 카드들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2015년 2월 16일 명령 이전에 승인되고 발급된 약 500건의 3년 취업 허가 서류가 미우정청의 배달 불능으로 인해 미국이민국에 반송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카드들은 명령이 내려진 후에 갱신된 주소로 재우송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이민국은 동 수혜자들의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2년 간의 유예 조치 및 취업 허가를 반영하도록 그들의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미국이민국은 이 분들에게 정정된 2년 취업 허가 서류를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민국은, 3년 취업 허가 서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일체의 관련 승인 통지와 함께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해당자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미국이민국은 이와 같이 유효하지 않은 취업 허가 서류의 반납 건수를 철저히 추적하고 있으며 나머지 카드들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3년 취업 허가 서류를 반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미국이민국에게 전화나 인편으로 연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3년 취업 허가 서류를 회수하기 위해, 미국이민국은 3년 취업 허가 서류를 반납하지 않거나 미국이민국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인편으로 연락할 경우, 미국이민국 직원들은 그들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제시할 것입니다. 미국이민국은 방문에 앞서 해당자에게 전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동 조치는 명령 내려진 2015년 2월 16일이나 그 이전에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되고 우송되었으며 반송되거나 미국이민국에서 재발급한 적이 없는 약 108,000건의 3년 취업 허가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3년 취업 허가 서류"라는 용어는 2년은 넘지만 3년이 되지는 않는 유효 기간으로 발급된 카드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텍사스 대 미합중국에 대한 B-14-254번의 법원 명령(텍사스 남부지방법)이 내려진 후에, 미국이민국은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 및 관련 취업 허가 신청에 대해 2년 간만 승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3년 취업 허가 서류를 반납해야 하는 그룹에 속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궁금하거나 염려되는 사항이 있는 분들은 1-800-375-5283(TDD: 1-800-767-1833) 번으로 미국이민국 전국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여 옵션 8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해당 상황	그러면...	취해야 할 조치...
<p>2015년 2월 16일 법원 명령 이후에 귀하에게 발급된 3년* 취업 허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p> <p><i>*"3년"은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일체의 취업 허가 서류를 지칭합니다.</i></p>	<p>귀하의 3년 카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반납하셔야 합니다. 미국이민국은 귀하에게 2년간 유효한 대체 카드를 보내드리고 3년 취업 허가 서류를 반납하도록 요구하는 서신을 한두 차례 보내드렸습니다.</p> <p>무효한 3년 카드를 계속 소지하시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귀하의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와 모든 취업 허가를 종료시킬 것이며, 귀하의 행위는 미래의 유예 조치 신청이나 기타 재량사항 신청의 심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p>	<p>무효한 3년 카드를 저희 기록에 따르면 귀하의 주소로 2회에 걸쳐 별도로 우송된 통지서에서 지시한 대로 반납하십시오.</p> <p>귀하의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종료 의향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지시사항에 따라 카드를 반납하기 위해 미국이민국 약속 장소로 출두하거나 카드를 반납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미 반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p> <p>질문이 있으면, 1-800-375-5283 (TDD: 1-800-767-1833)번으로 전화하여 옵션 8을 선택하십시오.</p>
<p>당초 2015년 2월 16일이나 그 이전에 귀하에게 발급되었지만 법원 명령 후에 갱신된 주소로 재우송된 3년* 취업 허가 서류를 소지하는 경우</p> <p><i>*"3년"은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일체의 취업 허가 서류를 지칭합니다.</i></p>	<p>귀하의 3년 카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반납하셔야 합니다. 미국이민국은 2년 간 유효한 대체 카드를 보내드립니다.</p> <p>무효한 3년 카드를 계속 소지하시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귀하의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와 모든 취업 허가를 종료시킬 것이며, 귀하의 행위는 미래의 유예 조치 신청이나 기타 재량사항 신청의 심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p>	<p>기록 상의 귀하의 주소로 우송된 귀하의 유예 조치 및 취업 허가를 종료시키려는 의향 통지서 상의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통지서는 무효한 3년 카드를 우송하거나, 카드 반납을 위해 미국이민국 사무소로 출두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p> <p>질문이 있으면, 1-800-375-5283 (TDD: 1-800-767-1833)번으로 전화하여 옵션 8을 선택하십시오.</p>